





CONTENTS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01 고용노동부

02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개발비 지원	9
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10
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12
5.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13
6.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14
7. 모태펀드	15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7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19
3. 소셜벤처 육성	21
4. 소셜임팩트 펀드	22
5.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24
6.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5
7.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26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8
2. 토요문화학교 운영	30
3. 작은영화관 건립	31
4.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33

03 문화체육관광부

	5.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5
	6. 스포츠클럽 육성	36
	7. 관광두레 조성	38
04 산업통상지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R&D)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비R&D)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42 44 46
05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3.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53 55
06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 전	61 62
07 국토교통부	1.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 2.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활성화(마을관리협동조합) 3.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66 67 68

08 농림축산식품부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3.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72
09 산림청	1.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3.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76 78 80
10 행정안전부	1. 마을기업 육성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2 84
11 금융위원회	1.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85 87
12 기획재정부 등	1. 협동조합 활성화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4.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5. 어촌뉴딜 300	96
	[참고]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활용 관련 개선 현황	98



0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 ☑ 사업규모: '19년 81,292백만원

지원대상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 '19년 1인당 월 1,913천원 기준 예비50%, 인증40%(취약계층 +20%) 지원, 기업당 최대 50인 이내
- ☑ 지원규모 : 7,409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19.1월~2월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19.3월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19.4월
수업수행 및 정산	사업참여기업	'19.12월

^{*} 구체적 일정은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사업개발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 사업규모: '19년 21,280백만원

지원대상

- ☑ 사회적경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업내용

☑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지원

구분	연간지원한도	최대 지원한도	지원항목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3억원	브랜드·기술개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인증, 예비 등 포함)	R&D, 홍보·마케팅

- (지원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 3억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매칭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 10% →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 ☑ 지원규모: 1,200개소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19.1월~2월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19.3월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19.4월
사업수행 및 정산	사업참여기업	'19.12월

^{*} 구체적 일정은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목적 실혀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숙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 사업규모: '19년 28,058백만원

지워대상

-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2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3인 이상으로 구성,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교육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개발, 상품화개발, 홍보·마케팅, 기자재구입 등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1천~5천만원, 800개팀)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멘토링)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 경영관리·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전문 멘토링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 추진체계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지원기관 모집·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11월~'19.1월
창업팀 모집·교육	창업지원기관	'19.1월~2월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2월
창업지원·인큐베이팅	창업지원기관	'19.2월~12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창업기업에게 입주・협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창업의 지속성장 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률 제고
- ☑ 사업규모: '19년 4,108백만원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공팀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협업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편의시설,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
 - (프로그램)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 경영·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멘토링 연계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 (협업지원) 입주기업간 상호교류 지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지원규모 : 성장지원센터 기존 6개소 + '19년 4개소 신규조성(1개소당 50개 창업팀 입주)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성장지원센터 입지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월
성장지원센터 조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4월~11월
성장지원센터 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8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031-697-7763

5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품 판매,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 ☑ 사업규모 : '19년 1,985백만원 (2차 구축예산)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상품몰) 전국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및 결제서비스 제공, 유형별·지역별· 인증별·사회적 가치 정보 제공 등
 - (규모) 11,865개 상품, 560개 기업(19.4월 기준)
 - (구성) 베스트관(우수 판매 상품, 추천상품), 인증상품관(우선·의무 인증 상품), 팔도기업관(지역별 기업 정보 및 지역쇼핑몰 연계) 등으로 구성
 - (공공구매 활성화) 후불결제, 견적결제(대량구매 지원), 구매패턴을 반영한 상품 추천, 상품별 지역· 우선구매·의무구매·사회적 가치 정보 제공
 - (콘텐츠 공유) 지역의 사회적경제 쇼핑몰, 사회적경제 소셜벤더 등을 대상으로 상품 콘텐츠 및 운영 전반 공유
 - (폐쇄몰 등 연동)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용하는 폐쇄몰* 등과 연동
 - * 공무원연금공단 사내복지몰과 연동 완료
-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조달정보 제공(2차 구축,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 (판로지원 정보 관리)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 등 지원(2차 구축, 유관기관 판로지원 사업으로 영역 확대)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구축업체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월
2차 구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12월



문의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2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 ☑ 사업규모 : 비예산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사업내용

-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8년 실적제출 대상 841개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 (우선구매 범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 (구매실적 등 제출 및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
- ☑ (구매실적 관련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선구매 실적 반영
 -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기재부. '10년부터 평가). ②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안부, '11년부터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포함), ③ 지방공기업「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안부. '13년부터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포함)
-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취합(~2월말) 및 공고 (4월말, 고용부 홈페이지)
 - * '18년 구매실적 1조 595억원(총 구매액의 2.27%) '19년 구매계획 1조 1,631억원(총 구매액의 2.51%)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8년 구매실적 및 '19년 계획 취합	고용노동부	~'19.2월
실적 취합·정리	고용노동부	~'19.4월
공고	고용노동부	'19.4월



문의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4

7 모태펀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규모 : '19년 예산 투입 없음

• '11년 조성된 제1호 투자조합 운용기간(7년)이 만료됨에 따라 회수금액(40억원)으로 '19년 제6호 투자조합 결성예정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출자금액	175	25	25	25	25	75
출자년도	-	'11년	'12년	'13년	'14년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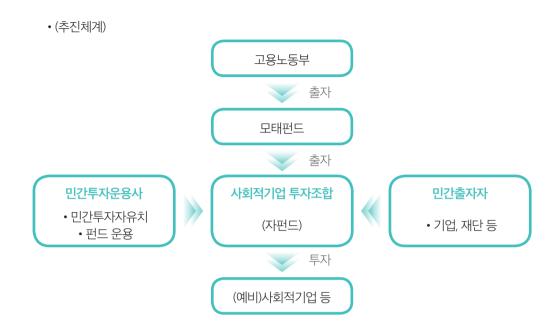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사업내용

- 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운용기관) (주) 한국벤처투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05.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한 공공 기관으로 모태펀드 관리·운용



☑ 지원규모 : '19.4월말 기준 총 5개 조합 결성(총 290억원), 사회적기업 등에 총 178억원 투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투자운용사 모집 공모	(주)한국벤처투자	하반기 출자사업 공고
투자운용사 선정	(주)한국벤처투자	-
민간출자자 모집 및 투자조합 결성	투자운용사	투자운용사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02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판로사업, 협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 사업규모: '19년 25,374백만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이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

구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택1)	① 조합원 1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연합회	

- 1) 협동조합기본법: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정관에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 →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 공동사업: 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Origi 마형		지원한		
	신청자격	일반(80%) (브랜드, 마케팅, 개발 등)	장비(70%)	전체 한도
일반형	소상공인 50%, 5개사 이상	1억원	1억원	2억원
선도형	소상공인 50%, 20개사 이상	59	1 원	5억원
체인형	소상공인 50%, (조합) 15개사 이상, (연합회) 조합 3개 이상	20	1 원	5억원

☑ 판로교육 : 온라인 판로, 지역판매전, 판로교육 등 지원

☑ 협업교육 : 협업교육·컨설팅 등 지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협업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아카데미 기관	'19.5월~12월
공동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3월~12월
판로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4월~12월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사업규모: '19년 3,952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사업내용

- ☑ 협동조합 정책개발
 -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조합 운영 간담회, 활성화 기반 구축, 종합관리 시스템 개선, 판로개척 지원 등 협동조합 재도약 정책인프라 조성
- ☑ 협동조합 역량강화
 - 협동조합 운영지도, 종합실태조사 및 평가, 맞춤형 교육, 중기 간 공동·협업모델 연구 및 개발, 조합 컨설팅 등 협동조합 역량강화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단체표준 종합포털시스템 안정화, 제정컨설팅 지원 등 단체표준 지원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기관(대상)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지원

☑ 지원규모

- 협동조합 정책개발(395백만원)
 - 협동조합 제도개선,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판로개척
- 협동조합 역량강화(706백만원)
-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851백만원)
 - 단체표준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추진일정

총회 의결후 사업계획승인 요청

중앙회



사업계획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중앙회



보조금 정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중앙회



국고보조금 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3 소셜벤처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 ☑ 사업규모: '19년 1,901백만원

지원대상

☑ 소셜벤처

사업내용

☑ 소셜벤처 실태조사

-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공헌(사회적 가치)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소셜벤처 명단을 확보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구축

- 소셜벤처 여부 판별, 평가 온라인 신청, 다양한 소셜벤처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소셜벤처 DB, 소셜벤처 맵, 우수 소셜벤처 소개 안내 등
- ☑ 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조직*을 활용. 성수동 일대의 자생적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심화
 -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등

☑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지역 수요와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 혁신기관과 협업)를 통해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수도권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수도권(성수동)과 같은 소셜벤처 육성 인프라가 지역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19.4월~5월
세부사업실행	보조사업자	'19.6월~12월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개별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또는 단체)을 선정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85

소셜임팩트 펀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 ☑ 사업규모: '19년 50,000백만원

지원대상

☑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내용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중소기업투자 모태 조합)에 기금을 출자
- (펀드규모) 모태펀드에서 700억원*을 출자(70%)하고, 민간자금(30%) 매칭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19년)
 - (19년 출자) 정부예산 500억원 + 모태펀드 회수재원 200억원
 - (펀드형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개인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주목적 투자대상)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선정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rightarrow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rightarrow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rightarrow 최종 선정

< 소셜 임팩트펀드 개요 >

구분	내용
모태펀드 출자비율	펀드 결성총액의 70% 이내
투자대상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운용기간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 2년 이상(운용사 자율제안)

<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 취약계층 포용 ② 불평등 축소 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 교육/저출산 ② 건강과 웰빙 ③ 고용/일자리 ④ 주택/주거 ⑤ 문화 등	① 공공장소 활용 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① 수질과 위생 ② 공해와 오염 개선 ③ 기후변화 ④ 청정에너지 등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출자사업 공고	한국벤처투자(주)	'19.2월
운용사 선정	한국벤처투자(주)	'19.4월
펀드 결성	펀드 운용사	'19.7월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총액목표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 ☑ 사업규모: '19년 50,00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단위: 억원)

창업기(2.0조원)

<규모>

- 창업기업자금 (20,460)
- -혁신창업, 개발기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규모>

• 신성장기반(8,800)

성장기(1.4조원)

- 신시장진출지원 (1.800)
- 투융자복합금융 (2,000)



<규모>

- 재도약(2,300)
-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
- 긴급경영안정(1,000)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책 우대금리 △0.1%p 차감 적용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1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모델을 창출

☑ 사업규모: '19년 10,000백만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구분(시행)	사회적기업(2007년)	협동조합(2012년)	자활기업(2012년)	마을기업(2010년)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사업내용

☑ 융자지원

- (지원규모) 직접대출 100억원 지원
-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융자조건)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10억원	2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대출 접수·심사·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5월~(자 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130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내용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대보증 지원
 - (지원규모) 300억원
 -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재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60%
- (보증료율/재보증료율) 연 0.5% 고정

■ (추진체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신청 후 지역신보 자체 평가로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사회적기업 평가위원회 평가 심의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60% 재보증 지원	연중

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역량 제고 및 예술계 자생력 강화
- 사업규모: '19년 3,867백만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업내용

☑ 창업 아이디어 발굴

- (대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 경진대회
- (규모) 총 30개 단체 내외(3개 주제 * 10개 예비기업)
- *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지원과 연계

■ 창업 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 Company Building)
 -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10~15개 우수기업
 - (규모) 예비 기업별 최대 15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실패사례 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재도전 창업자 대상 5개 권역 교육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 컨설팅 지원(수시/맞춤형/지역연계 컨설팅)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원
- (대상) 초기 창업 기업(3년 미만)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규모) 10개 기업,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팅 지원
 - (대상) 성장·성숙기 기업 대상 데스벨리(Death Valley) 극복 지원
 - (규모) 10개 기업, 최대 80백만원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10%)
- (공)기업 및 투자기관 매칭 지원
 - (공)기업 협력사업 제안서 피칭 10개 기업 내외, 1:1 비즈니스 미팅 40건 내외
 - 창업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배출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IR 컨설팅, 투자기관 매칭 주선 및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개최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 아이디어 공모·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19.5월~6월
창업 지원 선발·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9.6월~11월
경영 컨설팅	예술경영지원센터	상시 제공
인큐베이팅 공모·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9.4월~12월
엑셀러레이팅 공모·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9.4월~12월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19.12월초
지원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예술경영지원센터	'19.12월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사업규모: '19년 6,193백만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등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규모

- 30여 개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 프로그램별 25백만원~60백만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공모·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9.2월~4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단체	'19.4월~11월



3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 대상 최신 개봉영화 관람이 가능한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
- 사업규모: '19년 4,327백만원

지원대상

■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 (19.4월 현재 52개)

사업내용

- 작은영화관 건립 지속 추진
 - 전국 동시 개봉 최신영화 관람 가능한 소규모 상설 상영관(100석 내외) 건립 지원
- 지원규모 (11개소, 43억원)
 - 신규 : 강원(태백, 철원), 전남(담양, 해남, 영광, 신안), 경남(창녕), 경북(울릉) 등 8개 지역
 - 계속 : 충북(보은), 경북(의성, 봉화) 등 3개 지역

(단위: 백만원)

구분	개소수	대상지역
신규	8	강원 2개소 700 (태백 300, 철원 400) 전남 4개소 2,000 (담양 500, 해남 500, 영광 500, 신안 500) 경남 1개소 800 (창녕), 경북 1개소 180 (울릉)
계속	3	충북 1개소 325 (보은) 경북 2개소 322 (의성 90, 봉화 232)
계	11	4,327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제출	지방자치단체	'18.4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예산 부처안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18.5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예산 정부안 제출	기획재정부	'18.9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예산 확정	국회	'18.11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19. 1분기, 3분기
작은영화관 지역별 개관 현황 등 추진실적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19. 상반기, 하반기

4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각예술 소외지역 유휴공간 및 기존 전시시설의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 도모
- 사업규모: '19년 700백만원

지원대상

공모 유형	지원대상
신규조성 지원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지속운영지원	• 조성 2년차~3년차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전시활성화 지원	 조성 4년차 이상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 전시실을 보유·운영하는 지역문예회관 중 해당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문예회관 운영주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사업내용

- 생활권 내 등록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절실한 지역 내 유휴 공공 생활문화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규모 (약 10개소)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신규조성지원) 6개소 내외 (320백만원)
 - 신규조성지원 약 1개소 * 70백만원 = 70백만원
 - 지속운영지원 약 5개소 * 50백만원 = 250백만원
 -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약 4개소 * 40백만원 = 160백만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 공모 및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4월
1차 심의, 현장 방문 및 컨설팅, 2차 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5월
선정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6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6월~12월
실적 및 정산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5월

5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하루(금~일요일)를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 사업규모: '19년 300백만원

지원대상

■ 전국 작은도서관 100개관

사업내용

- 도서관 특성을 살린 '문화가 있는 날 브랜드 프로그램' 기획·운영
 - 그림책으로 만든 노래 배우기, 그림책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
-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참여 도서관과 강사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관계 고취로 참여도와 효율성 증대
- 지원규모: 1개관당 평균 3백만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기본계획 수립, 주관단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18.12월~'19.1월
주관단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9.1월
시행도서관 모집,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강사 발굴, 홍보물 제작 배포	사업주관단체	'19.2월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진행	사업주관단체	'19.2월~12월
현장 점검	사업주관단체	'19.3월~11월
결과보고서 제작	사업주관단체	'19.12월



6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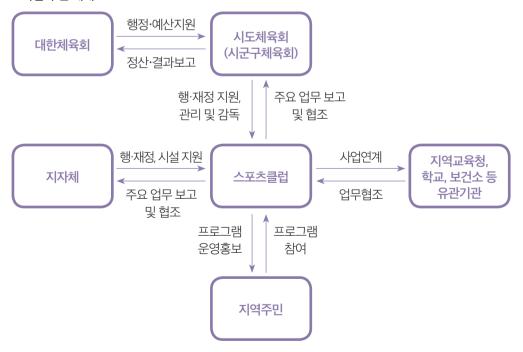
- 국민들이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 사업규모: '19년 15,458백만원

지원대상

■ 전국 스포츠클럽 (19년 5월 현재 89개소, 8개소 추가선정 예정)

사업내용

■ 체육시설 중심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종합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설치·운영 지원 < 사업 추진 체계도 >



- 2019년 신규 스포츠클럽 공모
 - (선정규모) 총 21개소(대도시형 12개소, 중소도시형 9개소)
 - 1차(19.3~5월, 13개소) 및 2차(19.6~8월, 8개소 예정) 공모 추진

☑ 지원규모

• (지원내역)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비용, 스포츠클럽운영에 필요한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액	인구수	운영기능종목	체육시설
대도시형	연3억, 3년지원	20만이상	5 종목 이상	상시운영 가능한 체육시설 1개 이상
중소도시형	연2억, 3년지원	20만미만	3종목 이상	위탁·소유 형태 확보

• (운영) 비영리법인 설립 → 등기 → 지원금 교부 → 정산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신규스포츠클럽공모	대한체육회 → 시·군·구 지자체	'19.3월~8월
예산교부 및 지침 통보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19.4월~9월
클럽관계자 교육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분기별 1회
컨설팅 및 성과평가	대한체육회 → 스포츠클럽	'19.3월~12월
평가회	대한체육회	'19.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대한체육회 → 문체부	'19.12월

7

관광두레 조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화구조 확립
 -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사업규모: '19년 8,000백만원

지원대상

■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광분야 사업체,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사업내용

☑ 관광두레 PD

- (역할) 담당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전담, 지역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시행, 관광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원 등 주민사업체 현장 밀착 지원
- (지원내용) 월 240만원 내외 활동비 지급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기본 3년 지원. 단,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당지역에서 활동가능한 자, 성별· 학력·연령 제한 없음. 단, 관광두레 유사사업 경력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해당지역 거주자 우대
- (선발방식 및 시기) 매년 12월 공고 후 차년도 3월 최종 선발

공고/설명회, 신청서 접수 12월~1월(50일간)

문체부, 문광연, 지자체 누리집 게시, 설명회 개최 **서류평가** 1월(2일간)

평가위원회, 2배수 선발 **인적성검사** 2월(2일간)

온라인검사

면접평가 2월(2일간)

평가위원회, 워크숍 형태 **최종선발** (3월)

평가위원회

^{*} 선발 일정은 사전공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사업체

- (역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
- (지원내용) 주민사업체가 창업 및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PD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법무 상담,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시제품 출시, 모객 및 판로 지원 등)
 - 기본 3년 지원. 단,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구분	목표	지원사항
1차년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및 멘토링 예비으뜸두레 선정 및 사업비 지원
2차년도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파일럿 사업 운영 •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3차년도	안정성장 기반 구축	사업체 운영 전략 컨설팅 관광두레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마케팅 강화

^{*} 언론홍보, 청년 서포터즈 운영, ICT플랫폼 등재, 크라우드펀딩 등

- (지원조건) 선발 지역 주민공동체 및 사업체, 사업분야는 관광사업 분야로 한정,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 (선발방식 및 시기) 관광두레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5월 공고 후 7월 선정

공고/설명회,신청서 접수5월~6월(30일)

PD의견서 작성 (6월) **1차 평가** (6월) 서류 평가 **2차 평가** (7월) 현장실사 3차 평가 **및 선정** (7월말)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관광두레 신규 지역 및 PD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12월~'19.3월
관광두레PD 육성 교육,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선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5월~7월
관광두레PD 및 주민사업체 육성,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7월~11월
관광두레 성과 평가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12월~'20.2월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 02-2669-8466

^{*} 선발 일정은 사전공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04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R&D)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업규모: '19년 6,953백만원

지원대상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관 : R&D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기업
 - 주관기관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활동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지원

<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지역	품목명	지역	품목명
부산	도시재생	충북	농촌친화바이오, 태양광유지보수
대구	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 자원재활용	충남	유통판매, 산림에너지, 한류슈퍼푸드
광주	웰니스	전북	IT문화
대전	의료, 지역화폐	전남	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 전통발효식품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섬유, 돌봄, 친환경소재
세종	IT문화, 도시청결, 스마트푸드	경남	IT수산시장, 식품안전체계
강원	로컬푸드, 강원통합돌봄	제주	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 지역 내 자원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다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9년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1월~3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지역사업평가단	'19.3월
신규과제 선정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3월
협약·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4월



2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비R&D)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 현장에 있는 기업에 대해 개발된 기술의 접목 및 디자인·판로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규모: '19년 5,850백만원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영리기업, 대학·연구소·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활동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지역	품목명	지역	품목명
부산	도시재생	충북	농촌친화바이오, 태양광유지보수
대구	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 자원재활용	충남	유통판매, 산림에너지, 한류슈퍼푸드
광주	웰니스	전북	IT문화
대전	의료, 지역화폐	전남	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 전통발효식품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섬유, 돌봄, 친환경소재
세종	IT문화, 도시청결, 스마트푸드	경남	IT수산시장, 식품안전체계
강원	로컬푸드, 강원통합돌봄	제주	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 비R&D 지원프로그램 예시 >

구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네트워킹	기타
세부 프로그램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시험분석	디자인, 브랜드개발개선, 마케팅, 컨설팅, 상품기획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일정

☑ '19년은 신규과제 선정 없음



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구축을 통해 통합지원체계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 사업규모: '19년 5,600백만원(타운당 2,800백만원)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사업내용

-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비 50%이상), 설계비, 건축비(부지제외),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 등 지원



< 혁신타운 구축 표준모델 >



사업기간 : 총 3년 타운당 총사업비 280억원

'19년 2개 시범조성 → 점진적 확대

- 생산, 소비, 지역 맞춤형 통합 플랫폼
-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지원 인프라
- 주민고용,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복합공간
-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개방형 공간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자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19.2월~3월
현장실사·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3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9.4월
사업비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선정지자체	'19.6월



4 기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 ☑ 사업규모: '19년 700백만원

지원대상

- ☑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 인력지원 사업은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 기업에서 디자인인력에 급여지급

사업내용

- ☑ 디자인주도의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 **사회적기업 디자인컨설팅**: 사회적기업 서비스·비즈니스 진단, 디자인 인식제고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 인식제고 교육) 디자인혁신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디자인씽킹 활용 서비스모델 혁신 워크숍 지원(30개사)
 - (소셜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기업별 사업현황 및 이슈 진단,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중심 현장 컨설팅 추진(6개사 내외, 3개월)
 -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 사회적경제 서비스·비즈니스모델 혁신사례 개발을 위한 선행사례 개발
 - (서비스·BM개발 지원) 산업적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공모, 시범실행 및 사업화 지원(2건)
 - 사회적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 사회적기업 대상 디자인인턴 지원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및 채용연계 (15개사 내외, 5개월)
 - * 인력 Pool제공, 사업설명회 등 채용연계로 채용절차는 지원기업이 직접진행

☑ 지원규모

- 사회적기업 디자인컨설팅(교육컨설팅, 비 자금지원)
- 디자인씽킹 인식제고 교육 30개사 내외 (1일)
- 소셜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6개사 (3개월 내외)
-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 : 2팀 × 팀당 1억원 내외

• 사회적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15개사 내외

지원 기간	지원비율	기업 부담비율
5개월	지원인력 급여의 80%내외	지원인력 급여 20%이상

☑ 후속지원 및 자원연계

• 참여 디자이너 실무자 재교육, 디자인상·전시 출품 및 홍보확산 지원 등 관련 사업 연계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원기업 및 디자인인력 모집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19.4월
지원기업 선정 완료,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아이디어) 모집공고, 인식제고 교육 / 인턴채용기업 설명회	한국디자인진흥원	'19.5월
디자인인턴공고 및 선정	지원기업	'19.6월
인턴 인건비 지원 및 교육	한국디자인진흥원	'19.7월~12월
디자인 컨설팅 운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기업	'19.6월~9월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아이디어) 공고 마감	한국디자인진흥원	'19.6월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아이디어) 선정 완료	한국디자인진흥원	~'19.7월
서비스디자인 개발	지원기업	'19.8월~12월

5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확대 등 글로벌화 지원
- ☑ 사업규모 : '19년 650백만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업내용

☑ 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출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대상	프로그램
역량강화 패키지	내수기업	① 이동KOTRA 및 기업별 글로벌 역량진단, ②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수출첫걸음 패키지	내수기업	① 컨설팅 및 마케팅지원, ② 영문카탈로그 제작, ③ 바이코리아 온라인마케팅
수출확대 패키지	수출기업	① 디지털마케팅(페이스북, 아마존US 등), ② 해외시장조사, ③ 세일즈출장지원

☑ 국내외 수출마케팅 사업 참가지원

- 국내외 주요 수출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 붐업코리아(4월), 서비스 수출대전(5월), 소비재 수출대전(6월), 방콕 한류 박람회(6월), 한국상품전 (9월),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대전(10월) 등

☑ 아트콜라보 사업 (상품디자인 경쟁력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예술가 작품을 접목하여 디자인을 개선한 아트콜라보 상품 제작 지원

☑ 글로벌 사회적경제 대전 개최

• 해외 사회적경제 선도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멘토링, 매칭 상담회, 포럼 등 개최(19.7월)

■ 해외진출 우대제도 확대 운영

7.11	TOURO	서비스 է	변경내역	
구분	주요내용	'18년	'19년	시행시기
	해외시장 조사 (사업파트너 연결)	-	20% 할인	
수수료할인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프리미엄 서비스 제외)	-	20% 할인	즉시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1회 무료	3회 무료	
IJIO TIQI	아트콜라보 특별전 (기업-예술인 매칭 통한 상품화 지원 및 전시)	무료 (시제품 제작비)	좌동(지원기업 확대)	~ II
비용 지원	아마존 입점지원 (온라인 유통망 입점, 물류, 마케팅 교육 등)	무료 (KOTRA 지원)	좌동(지원기업 확대)	즉시
사업 선정 우대	수출마케팅행사 참가우대 (상담부스 제공 혹은 샘플전시)	선정 우대	좌동(사업확대)	
	해외전시회 한국우수상품전	단체참가(2점) 개별참가(3점) 가점	좌동	즉시
	바이코리아	사회적기업관 운영	좌동(지원기업 확대)	
	신규수출기업화	_	선정우대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수출첫걸음지원	가점제도(5점) 운영	좌동	
	지사화	_	가점제도(5점) 운영	
	소비재 선도기업	_	가점제도(5점) 운영	2분기
	서비스 선도기업	_	가점제도(3점) 운영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역량별 맞춤형 지원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아마존 입점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아트콜라보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중
글로벌 사회적경제 대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7월



05 보건복지부

1 사활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 ☑ 사업규모 : 비예산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 * '18년말 기준 자활기업 1,211개소, 참여자 10,849명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자의 근로일수가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등
 - 창업전 교육(필수) 및 경영자 과정(권고) 이수

사업내용

☑ 창업자금,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 자활기업 지원 일람표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사업자금 융자	자활기업 당 2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자활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 금융기관 대출이자율-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기금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까지	
• 인성 후 3년이 경과된 시원 대상 사활기업 , 최대 5선만원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5년: 50%	자활근로 사업비
	(비수급 참여자) 창업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3개월 : 100%, 이후 3개월 : 50%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잉여금
66-1	• (전문가) 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 제한조건 :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자활기금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사업우선 위탁	• 사활근로사업 또는 비가위탈사업의 경우 우선 위탈 시원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 지원규모

•국비 지원은 없으며, 시도·시군구 '18년도 자활기금 지원총액은 20,866,950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총액	전국평균 (17개시도)	비고
자활기업	3,362,338	197,785	-
자활근로사업단	9,619,008	565,824	지역자활센터 포함
자산형성지원사업	87,054	5,120	_
저소득층 지원	3,509,511	206,441	-
기타	4,289,039	252,296	생활안정기금 등
합계	20,866,950	1,227,483	-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자활기업 지정	지자체	연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자활연수원)	'19.7월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연대·협력(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공동체 구축
 - * 대표기관(사회적경제 협의조직 1개 기관) 및 구성기관(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 ☑ 사업규모 : '19년 250백만원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사업내용

-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협력(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 사업모델*을 선택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실시

< 사업모델 유형 >

구분	내용		
지역돌봄 사업 연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연계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을 통한 퇴원지원, 주거지원, 요양·돌봄 등 종합 지원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연계	- 사회적경제 연대·협동을 통해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등 서비스 제공	
新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 신규 서비스 : 청·중·장년 1人가구 등 서비스 제공 사각 지대,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이 어려웠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 세대·계층 통합, 다문화 사회통합 등 소셜 믹스(social mix)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서비스 창출 		

- ☑ (지원규모) 3.5억(국비 2.5억원,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70%)
 - 지자체별 사업비 5천만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교육·컨설팅 추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4월~
사업 추진상황 중간 보고	보건복지부	'19.9월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3

•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삶의 질 제고, 돌봄 경제 육성

☑ 사업규모

연번	사업명	'19년 예산*(백만원)
1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385
2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349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9,103
4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9,169

^{*} 각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의 전체 액수로서, 사업비 전체가 사회적경제 연계 자조모임 활성화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님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주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9,600명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만 18세~64세) 발달장애인 2,500명 (19)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지원제외)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이용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만 12세~17세) 발달장애인
 - (선발기준)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 학생으로 하되 신청대상이 지원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관리 및 순차적 지원 연계
 - (지원제외)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온종일교실(이상 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이상 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프로그램 등 유사 복지사업 이용자

^{**}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고용노동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작은영화관 건립, 스포츠클럽 육성(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사업이 포함

사업내용

-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 고용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수의 약 15% 이상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작업시설, 편의시설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 최대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3천 만원 지원)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 * 1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판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의무 부과(0.3%)
-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가를 모집하여 참여자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본운영비(1인당 20만원), 취업 연계수당(1인당 20만원) 지원
 - 자치단체 위임(보조율 50%), '19년 12개 지자체 선정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기본형 기준) 제공
 - 제공시간은 지원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가지 유형 중 매칭

구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주간활동	88시간	44시간	120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_	△ 72시간
총급여량	+44시간	+48시간	+48시간

[※]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
 - 일일 2시간 기준,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 지원규모(2019년)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창업비용 50백만원 × 5개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운영비 227백만원* × 5개소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잔여 지원금은 차년도에 추가 지급 가능, 창업비용과 설립·운영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10억원 내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참여자 1인당 기본운영비 20만원, 취업서비스 연계 성공 시 연계 수당 1인당 20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 중증장애인 9,600명에 대해 동료지원 활동 제공 및 취업서비스 연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만 18세~ 64세) 발달장애인 2,500명
 - 연도별 확대계획 : ('19) 2.5천명 → ('20) 4천명→ ('21) 9천명 → ('22) 17천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만 12세~ 17세) 발달장애인 4,000명
 - 연도별 확대계획 : (19) 4천명 → (20) 10천명→ (21) 15천명 → (22) 22천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3월~4월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본부, 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	'19.4월~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본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공기관	'19.3월~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 바우처 시 스템 구축 완료	사회보장정보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비로소)	'19.7월		
주간활동제공기관 평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9.12월		
주간활동대상자 만족도 조사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9.12월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연구용역 진행	복지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9.4월~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침 마련 및 배포	복지부	'19.6월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자체 담당자 및 발달센터 담당자 교육	복지부	'19.6월		
방과후돌봄서비스 홍보 시행	복지부, 지자체,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9.6월		
방과후돌봄서비스 본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공기관	'19.하반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749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일자리지원부, 고용환경부 031-728-7379, 706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 02-3433-4503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대상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마련
 - *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수요자가 살던 곳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 ☑ 사업규모: '19년 6,393백만원

지원대상

- 8개 선도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 *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9년 8개 지자체 선정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사업내용

- ☑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등 운영
 - (케어안내창구) 돌봄 수요자에 대한 기초욕구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민원) 접수· 대행 등 실시(읍면동 등)
 - (지역케어회의)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욕구대상자에 대한 종합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시군구 단위 운영)
- (대상자별 서비스)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욕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 추진
 - 지역 자율적으로 대상자군을 설정,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재원, 연계사업 및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고 사회적기업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돌봄 및 건강관리 제공 등
- ☑ 지원규모: '19년은 8개 지자체 선정·추진
 - 선도사업 재원(19, 국비 64억원 지원), 연계사업 및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공모 개시	보건복지부	'19.1월~3월
선도사업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	'19.4월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선정 지자체	'19.6월~

문의처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044-202-3693, 3695
-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광주 서구 복지정책과 062-360-7626 경기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821 충남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041-521-2321 전북 전주시 생활복지과 063-281-5035 경남 김해시 시민복지과 055-330-6712



•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

제주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1 대구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3203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 경기 화성시 보건행정과 031-369-6262

1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 조합 활성화 추진
- 사업규모: '19년 1,050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中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 17개 시·도교육청(교육청을 통해 개별학교 지원)

사업내용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별 활성화 지원
 - (중앙지원센터 운영) 협의회·컨설팅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콘텐츠·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한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교육청별 지원센터 구축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학교협동조합의 확대를 위해 신규 학교협동조합 설치 추진교에 약 1천만원 지원(약 48개교) ※ 시·도별 여건 및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조정 가능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학교협동조합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부	교육부	'19.1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2월
학교협동조합 협력네트워크 협의회 및 워크숍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3월
시·도교육청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4월~



문의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1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 02-3780-9952



2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 및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
- 사업규모: '19년 3,900백만원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및 일반연구소

사업내용

- (주요내용)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내 문제해결형(사회적경제 등) 유형 신설
 - ※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학 연구거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 (추진체계)

교육부

- 종합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한국연구재단

- 세부계획 수립
- 과제 공고, 선정 및 평가
- 성과관리 및 자료 개발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 과제 신청
- 과제에 따른 연구 실시
- (추진실적) 2019년부터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에 문제해결형 분야를 신설하여 집단연구 지원 강화
-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2018.12.31.) 및 발표 완료
- ☑ 지원규모 : '19년 신규사업으로 미정
 - ※ 사업 성격상 연구과제는 상향식·우수과제 선정 중심이므로 적격 연구소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소가 미지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한국연구재단	'19.4월~5월
평가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19.6월~8월
연구 개시	신규과제 선정 연구소	'19.9월~



문의처 교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854, 687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042-869-6132



3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확산 및 대학 내 창업인재 발굴 육성을 통해 대학 내 적극적인 창업 붐 조성
 - (사회적경제 관련)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콘텐츠 활용이 확대 되도록 적극 유도
- 사업규모: 19년 1,225백만원

지원대상

☑ 전체 대학 및 대학 내 창업팀

사업내용

- ☑ 대학 내 창업교육 인프라 확산 및 내실화
 -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교육 후발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창업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 * 지방대학, 비LINC대학 등 창업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대학
 - (창업전담인력 전문가 연수) 대학 내 창업 전담인력(교·직원) 전문가 연수를 통해 대학의 실전창업 지원 역량 강화
 - (매뉴얼 및 교육콘텐츠 보급) 창업 친화적 제도*, 조직운영 방식, 교육과정 등 안내 및 양질의 교육 콘텐츠 보급
 - *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창업장학금 등 (인사제도) 창업연구년제, 창업휴·겸직제, 업적평가에 창업실적 반영 등
 -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changgo.or.kr)' 통해 보급

■ 대학 내 창업인재 발굴·육성

- (학생 창업경진대회) 대학 내 유망 학생 창업팀을 발굴·육성하고, 관계부처(중기부·과기정통부 등)와 협업하여 단계적 지원
- ※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교육부·과기정통부 등 주관)와 연계 운영
- (네트워킹 행사 등) 권역별 학생 창업동아리 대상 행사 운영

☑ 지원규모

- (창업교육 컨설팅) 연간 10개 대학 내외 공모 선정, 컨설팅 제공
- (경진대회) 학생 창업팀 300개 발굴, 성장지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창업교육 컨설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19.7월~9월
창업교육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19.하반기
학생 창업경진대회		'19.5월~11월
창업전담인력 연수	창업교육 거점센터	(동계) '19.1월~2월 (하계) '19.7월~8월
권역별 네트워킹 행사		상시

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지역의 여건 및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지원
- 사업규모: '19년 1,200백만원

지워대상

■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구 대상 신규 지정(7개) 및 기지정 시·군·구 대상 특성화 지원(10개 내외)

사업내용

-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국가시책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지원

〈평생학습도시 사업 (예시)〉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퇴직 중·장년, 장애인 등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등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 평생교육기관(대학 포함)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연수,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공간 확충* 등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 추진
 - *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사회적경제 학습공간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지역단위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속 확대(19년 누적 167개), 기존 도시 특성화 지원
- ※ 평생학습도시 현황(누적): (16) 143개 → (17) 153개 → (18) 160개 → (19) 167개

※ 19년 지원 규모 및 단가

구분	신청가능 대상	지원규모	지원금 규모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 未지정 시·군·구	7개 내외 (*19년 7개 선정)	90백만원 내외 (지원금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旣지정 시·군·구	10개 내외 (19년 12개 선정)	50백만원 내외 (지원금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19.1월
사업 신청 접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3월
본 심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선정심사위)	'19.3월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19.3월
착수협의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4월
컨설팅 실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4월~11월

1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비" 사업 추진
- ☑ 사업규모 : '19년 300백만원

지원대상

☑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단체·경제주체·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사업내용

- (주요내용)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위한 실전형 교육비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초기사업비(집수리, 시설관리, 문화·예술, 복지, 기획 등) 지원
 - (교육비)도시재생지원센터가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등 경제활동,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기 사업비)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마을축제 기획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초기사업비
 - 건당 최대 500~1,000만원,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 (지원규모) '19년 예산(약3억) 소진 시까지 수시 발굴 및 지원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9년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LH지원기구	'19.1월
사업화 지원 공고	국토교통부, LH지원기구	'19.4월
선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 LH지원기구	연중



일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044-201-4918 LH 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05



2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활성화(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주도로 결성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화 지원
- ☑ 사업규모 : '19년 100백만원 내외(지자체 편성)

지원대상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설립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내용

- (주요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의 정비 및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 특히, 저층주거지의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마을로 재생하려면, 사회·문화·복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제고가 중요
 - 공공에서 공급하는 기초 생활인프라는 지속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희망 프로그램 반영에도 한계
 -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기초 생활인프라 운영·관리, 공적임대주택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재생효과의 지속성 확보
- (지원규모)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운영 시 조합당 2~3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약 5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을 포함할 경우,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보조금으로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가능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월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4월
인가 및 지원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중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3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1

3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 ☑ 사업규모 : 비예산

지원대상

- 사회주택의 공공성 기준*을 확보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 * (임대료) 시세 대비 85% 기준 낮을수록, (인상률) 연 5% 이내 기준 낮을수록, (임대기간) 15년 기준 장기 일수록 높은 점수 배정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사업내용

☑ 사회주택 공급

- LH 공모를 통해 토지임대부 건설형(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200호) 방식으로 연간 500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
 - * **토지임대부**: LH 또는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운영
 - ** 매입임대 운영위탁: LH 또는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사회적경제주체)을 선정하여 운영기관이 사회주택으로 재임대·운영

☑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택사업 및 재원조달 관련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및 사업성 분석·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주택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중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연중
교육 및 컨설팅	주택도시보증공사	'19.하반기

08 농림축산식품부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 사업규모: '19년 756백만원

지원대상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 단체

사업내용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 사회적 농장 1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최대 5년)
 -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발달장애아동,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 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 지원규모 (18개소)

• 사회적 농장 개소당 60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추진일정('20년도 사업자)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지침 의견조회

농식품부 → 시·도 ('19.9월)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 공모

농식품부 → 시·도 ('19.9월 중순)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신청자 → 시·군 (~'19.10월말)

사업자 적격심사·제출

시·군→시·도→ 농식품부(19.11월초)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19.11월 중순)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농식품부 → 시·도 ('19.11월말 / '20.2월)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회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 특히, 농촌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구축
- ☑ 사업규모: '19년 24,500백만원

지원대상

- 123개 농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R&D 등) 및 상품화, 가공 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지원
 - 신활력 추진단 구성원 중 상근직원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시군)에서 별도 예산 확보 후 채용(신활력 사업비에 미포함)
- (사업특징) 현장 기반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주도 사업 추진체계 정립
 -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민간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플랫폼 기능도 수행
 -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계획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등을 안정적 지원
 - 전문적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계획지원단 운영

☑ 지원규모 (누적 30개소)

- 사업지구(시군) 별로 4년 동안 70억원 지원(1년차 10%, 2~4년차 각 30%)
 -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중 30%는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활용

< '19년 선정시군 사업 추진 절차 >

1년차 사업비 :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추진단 워크숍, 활동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집행 가능

대상시군 확정 (~'19.3월말)

농식품부 → 지자체 통지 시군별 추진단 확정 (~'19.5월말)

시군 → 농식품부 제출 시군별기본계획 수립 (~'19.11월말)

시군 → 농식품부 제출 기본계획 협의 ('19.12월~)

농식품부 ↔ 시군

보완 지시 사업계획 보완 후 협약체결 승인(협약체결)

2년차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3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축제)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
- (농촌유학)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 (농촌교육문화복지)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
- ☑ 사업규모: '19년 4,267백만원

지원대상

- 볼 농촌축제 : 마을·권역단위 축제 60개소
- ☑ 농촌유학: 법인격이 있고 6개월 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 27개소
- ☑ 농촌교육문화복지 : 마을주민 공동체 200개소

사업내용

- ✓ (농촌축제) 농촌축제 개최에 필요한 기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등 축제 개최 비용 지원
 ◆ 시·군 단위의 관광성 축제가 아닌, 주민 중심의 축제 개최
- (농촌유학)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 센터 운영비, 보험 가입비 등 지원
 -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며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등 농촌 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
- ☑ (농촌교육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0~15명 이상의 주민 공동체가 복지관·여성농업인센터 등과 협력하여 음악교실, 인문학교실, 치매예방 교실 등 운영

☑ 지원규모

- 농촌축제 개소당 6~10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50%)
- 농촌유학센터 개소당 9~55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촌교육문화복지 개소당 5~25백만원 차등 지원(국비 100%)

☑ 농촌축제

사업 계획 수립·시달

농식품부 → 시·도 (9월) 축제 계획서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9월 중순) 지원축제 선정·통보

농식품부 → 시·도 (10월 중순)

축제시행계획 수립 제출

시·군→시·도

시행계획 승인

시·도 → 농식품부에 보고

축제 시행

시·군

☑ 농촌유학

사업 계획 수립·시달

농식품부 → 시·도 (9월) 유학 계획서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9월 중순) 지원 유학 선정·통보

농식품부 → 시·도 (10월 중순)

유학시행계획 수립 제출

시·군→시·도

시행계획 승인

농식품부 승인

유학시행

시·군

볼 농촌교육·문화·복지

세부계획에 따라 공모

농어촌희망재단(11월)

사업신청

사업 시행기관(11~12월)

사업시행기관 선정

농어촌희망재단(12월)

시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익년 1월)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농어촌희망재단→농식품부 (익년 1~2월) 예산배정, 사업 수행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익년 2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9 농어촌희망재단 복지팀 02-509-2445

09 산림청

1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다양한 유 · 무형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 증가 추세
- 신규 창업자, 기존 산림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진입 촉진
- ☑ 사업규모: '19년 600백만원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산림형 기업 등
 - 산림사업법인, 산림복지전문업, 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내용

☑ '발굴' → '육성' → '성장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발굴) 찾아가는 설명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 진입지원 교육·컨설팅
 - 기초교육, 법인 설립 지원, 기업의 소셜 미션 정립, 제도 설명 등
- (육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제도, 신규 대표자 교육,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 방법, 재정지원 제도 안내, 정기 교류행사를 통해 사업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 연간 2~3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및 지정 심사
- (성장지원) 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 및 판로개발 등 자립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및 기업 CSR 활동 지원
 - 맞춤형 교육 바우처 지원, 기업경영 심화 컨설팅, 기업별 제품 · 서비스의 적합한 판로 확대, 금융 지원·인증 전환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연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찾아가는 설명회	한국임업진흥원	'19.2월~11월
사회적경제기업가 아카데미	한국임업진흥원	'19.3월, 5월, 8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및 심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이상 ('19년 총 3회 예정)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한국임업진흥원	상·하반기 1회 이상
교육바우처, 판로 지원 등	한국임업진흥원	'19.2월~11월
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연간 3회

2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육성과 차별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 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
-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산림일자리발전소 :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일자리가 주민의 주도 하에 자생적으로 창출되도록 도와주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 ☑ 사업규모: '19년 2,400백만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내용

- ▼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3년간 현장 밀착지원
 - 지역별로 전문(그루)매니저 각 1명씩 배치하여 지원활동을 전담
 -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 발굴 · 육성
 -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림인프라를 연결·조합하여 지역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교육, 멘토링, 파일럿 사업 등 간접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 프로세스 >



☑ 지원규모: '19년에는 35개 지역을 지원

• 1개 지역(시·군·구) 당 5개 내외의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그루매니저 모집공고	산림일자리발전소	'19.2월~3월
그루매니저 선발·배치	산림일자리발전소	'19.4월~5월
지역자원조사	산림일자리발전소	'19.6월~10월
지역공동체 발굴·지원	산림일자리발전소	'19.7월~12월



3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촌의 공동화·고령화, 일자리와 소득 부족의 문제를 지역의 산림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
- 산림 신품종 생명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산촌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활성화 및 산림생명산업 발전
- ☑ 사업규모: '19년 5,000백만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내용

- ☑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 신품종 분야와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합
 - (국가) 신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유한 신품종 특허권, 재배기술 등을 지원
 -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 신품종을 대량 생산하여 제약 · 화장품 · 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 원료로 공급
 - 수익은 마을 복지사업 활용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산림 신품종 출원 : 감·밤·대추·야생화·산채·표고버섯·산초 등 99종 370품종
- <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체계 >



☑ 지원규모 : '19년에는 2개 지역(평창, 하동)에 재배단지 조성

- 연간 2개소씩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예정
 - 1개 재배단지 당 지역주민 등 50명 규모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재배단지 실시설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9.3월~4월
재배단지 조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9.5월~11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9.4월~11월
재배단지 준공, 협동조합 인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9.12월



10 행정안전부

1 마을기업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규모: '19년 7,805백만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사업내용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 * 단, 2~3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하게 공모 신청 후 선정되어야함

☑ 자립지원

- 판로지원,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조성 추진, 온라인 박람회, 직거래 장터 및 품평회 등 개최
 - (교육 및 컨설팅) 마을기업 역량강화 유통·마케팅 등 전문교육,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 (홍보지원) 우수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등 사례 기획기사 보도, 홍보물(영상, SNS컨텐츠) 제작· 배포

■ 신청절차

마을기업 공모 (시·도)

(신규) 9~11월 (재지정·고도화) 4~5월



설립전 교육 이수 (고도화 제외)

서류접수 및 검토 (시·군·구)

(신규) 10~11월 (재지정·고도화) 5월

시·도 제출 (기초 → 광역)

(신규) 11월 (재지정·고도화) 5월

☑ 선정절차

서류접수 및 검토 (시·군·구)

(신규) 11월 (재지정·고도화) 5월

시·도 심사

(신규) 11~12월 (재지정·고도화) 5~6월

행안부 제출 (시·도 → 행안부)

(신규) 12월 (재지정·고도화) 6월

행안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심사) 서류·발표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지정) 결과발표· 지정

- 신규 : 1~2월 - 재지정·고도화
 - : 6월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 지역별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시행
- 사업규모: '19년 208,634백만원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 3대 기본유형'으로 추진 → 상향식·분권형 사업
 - 지역정착지원형 : 지역기업에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
 - 지역기업(마을기업 등)에 일자리 제공 +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 * 인건비(연 2.400만원) 및 기타지원금(연 300만원) 지원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 취·창업 간접비(임대료, 교육·컨설팅 등) 지원
 - * 취·창업 간접비(연 1500만원) 및 기타지원금(연 150만원) 지원
 - 민간취업연계형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인건비 등 지원 → 민간 취·창업 연계
 - * 인건비(연 2,250만원 한도내) 및 기타지원금(연 2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19년 기준 약 2.6만명)

• 지역정착지원형 : 1.1만명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0.5만명

• 민간취업연계형: 1만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지역 밀착형 홍보	행안부, 지자체	'19.1월~2월
지자체별 참여자 모집 및 매칭 시행	지자체	~'19.3월
이행상황 정검 등 관리 강화	행안부, 지자체	분기별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13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사업규모: '19년 20,000백만원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내용

보증공급

- (추진내용) 특화된 보증상품을 통해 운전·설비투자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
 -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22년까지 최대 5,000억원의 보증공급

1000

<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계정예산	자체	200	125	125	125	575
운용배수	-	8.0		_		

1,000

1.000

1.000

■ (지원규모) '19년중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목표('18년 690개 기업, 1,077억원 보증 공급)

1.000

(단위: 억원, 배)

5.000

< 과거 연도별 보증공급 실적 >

(단위 : 개, 억원)

구분	'14	1년	'15	5년	'16	6년	'17	7년	'18	3년
十七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보증공급	128	89	140	95	166	119	181	158	690	1,077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사업 수행 기관에 보증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신용보증기금	연중



2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사업규모: '19년 300백만원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금융 업무 수행기관

사업내용

- (주요내용) 업종, 지원규모 등 유형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성과와 상환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 수치 또는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산출되고, 필요에 따라 기존 평가체계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세분화된 결과값 제시
 - *사회적 가치 실현, 상환가능성 등 평가모형 내 지표 영역
 -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평가지표 단위의 평가매뉴얼 제시

< 평가시스템 구성(안)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보증기금	연중



문의처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 02-2100-261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4

12 기획재정부 등

1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기본법」및「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법령개정,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을 마련
 -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판로확대, 전문기관 자문 등수행
 - 협동조합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사업규모: '19년 5,830백만원

지원대상

■ 협동조합 종사자,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

사업내용

-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맞춤형 아카데미'(40과정)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실시,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상시상담 및 현장 경영 컨설팅
-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60팀×6.5백만원, '19년)
 - 청년, 시니어 등 협동조합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팀 아카데미 창업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
 - 사업구상부터 법인설립까지 전문 인큐베이터 밀착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화 및 활동지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월~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4월~'19.11월
협동조합 판로지원·공공구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시

문의처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경력단절,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주체가 주도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 사업규모: '19년 1,926백만원

지원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설립 운영자

사업내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 (개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 지원
 -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전략, 마케팅기획 등 전문컨설팅 및 제품·기술 고도화를 위한 개발지원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 (18년 성과) 협동조합의 사업 단계 및 조합원 특성에 따른 유형별(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화 사례 도출

■ 교육·컨설팅

- (개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운영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컨설팅 실시로 과학 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및 확산
- (18년 성과) 과학기술인 대상 설립·경영지원 교육(총556명 수혜), 상담·컨설팅(총52건) 등 협동조합의 설립 및 참여 지속 확산

■ 일거리 발굴·연계 및 성과확산

- (개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성장 자생력 증대, 잠재고객 확보, 사업자금 확보 등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성장 지원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간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4대 권역별 협의회 운영·지원사업」지원, 지역 내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참여
- (18년 성과) 모의·실전 펀딩 12개, 권역 및 중점 비즈니스별 협의회 4개 구성·운영 지원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 (개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지역공동체 혁신형"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
 - ※ 출연연, 대학 등이 포함된 중견형 협동조합 설립에 우수 사업모델 발굴, 인큐베이팅, 활동자금, 일거리 매칭 등의 지원 제공

■ 지원규모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일반형(12개, 과제당 21.5백만원) / 심화형(3개, 과제당 33백만원) / 고경력형(4개, 과제당 20백만원)
- (교육·컨설팅) 설립희망자(교육·상담 50건, 건당 0.8백만원) / 설립운영자(20건, 건당 4.5백만원)
- (일거리 발굴·연계 및 성과확산) 일거리 발굴·연계(300백만원), 홍보·성과확산(255백만원)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산·학·연 연계 협동조합 육성·지원(650백만원)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19.2월~11월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19.4월~11월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공모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19.6월~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사업 협동조합 선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7월~8월



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분야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예비창업자 대상 체계적인 창업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 사업규모 : '19년 175백만원

지원대상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내용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 매년 공모전을 통해 환경분야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창업전문기관의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 (대상)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 창업초기(2년 이내) 기업 또는 단체 등
 - * '16년 8팀, '17년 10팀, '18년 8팀 창업 지원
 - (추진내용) ①창업팀 공모·선정 및 창업격려금, ②창업전문기관의 멘토링, ③창업교육 및 창업 보육센터 입주
 - 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매년 10개팀 내외)에 창업격려금 지원(10만원~70만원)
 - ② 예비창업자들의 역량, 사업운영능력 등을 종합진단, 그 결과에 따라 1:1 맞춤형 멘토링 진행 (약 4개월)
 - ③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업계획수립, 마케팅 전략 등 사업착수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희망시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능)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2회 공모(반기별 1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업무지침 관련인증심사 원칙을 준용하여 선정
 - * 연평균 15개소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6개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서 발급(지정기간 3년) 및 사후관리 실시(컨설팅 등)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자립경영 구축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전환 견인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업종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대상)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기관, 후속컨설팅 희망기업
 - *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년 9개소, '17년 6개소, '18년 13개소 컨설팅 추진
 - (추진내용) ①기업인터뷰 및 사전진단, ②맞춤형 컨설팅
 - ①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기업현황, 사업내용, 수익구조, 사업환경 등 컨설팅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대표자 인터뷰 실시
 - ②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각 기업별로 적합한 전문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홍보·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홍보부스 지원) 부처 행사시(자원순환의 날 등) 홍보부스 및 운영비 지원(5백만원 내외)
 - * '16년 12개 기관, '17년 7개 기관, '18년 3개 기관
- (인증설명회)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개요,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 (간담회)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관련 정책· 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
- (워크숍) 권역별·분야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 (기타) 기획홍보(매년 6개 내외 기업), 현판 제작·배포

■ 자원 연계

- 환경부-LG그룹 민관협력('10~)을 통한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과 연계
- 창업부터 성장, 최종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금융·공간·성장 등 종합적 지원(연간 10억원 규모)

< LG소셜캠퍼스 지원현황 >

구분	지원내용
금융지원	• 스타팅그룹 8개소 총 160백만원(18년) • 그로잉그룹 3개소 총 250백만원(18년) ※ '11~'18년 130개 기업 총 130억원 지원
공간지원	• 고려대 산학관 내 738평 규모 'LG소셜캠퍼스'에 '19년 4월 현재 23개 기업 입주 중 (누적 37개 기업 입주)
성장지원	• 생산성 향상 컨설팅 1개사 • 해외벤치마킹
인재육성	• 소셜 토크콘서트 • 지역혁신가 양성프로그램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18년 신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1차)	한국폐기물협회	'19.2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한국폐기물협회	'19.3월
'19년 상반기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간담회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19.4월
'19년 상반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환경부	'19.5월~6월
'18년 선정 창업팀(8팀) 멘토링	한국폐기물협회, (사협)사람과세상	~'19.5월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샵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19.5월
'18년 신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2차)	한국폐기물협회	~'19.6월
'19년 하반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간담회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19.9월
'19년 하반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환경부	'19.10월~11월
'19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	'19.11월~12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 모색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 ODA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청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사회적 가치 달성에 기여
 - * '15년-'18년 4년간 총 21개국 56개 사업 발굴
- 사업규모: '19년 8,469백만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사업내용

■ CTS 단계별 지원

SEED 1

기술개발등 최대 3억원



SEED 2

시제품제작등 최대 5억원



SEED 3

수익사업모델 구축 최대 10억원

추진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2019년 신규사업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	'19.1월~3월
사업 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19.4월
약정 체결	한국국제협력단(KOICA)	'19.5월~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사업실 031-740-0550

5 어촌뉴딜 3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재생과 혁신성장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
- 사업규모: '19년 172,850백만원

지원대상

■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사업내용

■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개발

- (내용)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 어항을 통합한 특화개발 추진
 - *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 달성
- (구성)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항·포구 개선 등 공통사업, 지역 특화사업, 타부처 연계사업 등을 융복합하여 추진
- (협업) 범부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 투자·관리 → 범부처 연계 사업 패키지 지원

■ 지역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지역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사업 시행 全단계에 걸쳐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주민 갈등 해결 등 추진
 - S/W사업비(전체 사업비의 5% 이하)를 통해 지역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도모
- (전문가 자문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135명)로 구성하고, 지역별 전담배치를 통해 사업종료 후 3년까지 현장밀착형 자문·컨설팅 상시 지원하여 사업결과물의 지역자산화 및 역량강화 등 추진
 - *(분야) ①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②문화관광·레저, ③건축·디자인·경관, ④도시계획·토목기술 ⑤지역공동체·콘텐츠

추진 내용	추진주체	일정
'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해양수산부	'19.4월
자문단 현장방문(1차)	해양수산부	'19.3월~5월
자문단 현장방문(2차)	해양수산부	'19.하반기
'19년도 사업 설계 완료 및 착공(일부)	지방자치단체	'19.하반기
'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	'19.12월

참고 >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활용 관련 개선 현황

■ 물품·용역 입찰가점 확대(17.12 완료)

- 물품·용역 적격심사기준(기재부 예규)에 가점 부여 근거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 (사회적책임 항목) 가점 확대 (1점 → 2점)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가점 확대 (0.5점 → 1점)

■ 물품·용역 수의계약 확대(국가 '19.3 완료/ 지방 '18.7 완료)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국가계약법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령)
 - *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 (기존) 2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국유 '19.3 완료 / 공유 '18.12 완료)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및 매각대금 5년이내 분할 납부 허용(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8.3)
 - *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 ** 사용요율 인하 : (기존) 재산가액 5% 이상(일반요율) → (개선) 2.5% 이상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100이내 감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전 화 031-697-7700

팩 스 031-697-7889

웹사이트 www.socialenterprise.or.kr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031-697-7700 Fax.031-697-7889